

『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6월 30일

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20310호)개정으로
- 수수료 징수금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하여 유사 사무에 대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
 - 지방세납세(완납)증명서 : 800원 → 감면 <신설>
- 법령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현실화
 -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: 300원 → 900원
 - 공유재산의 대부(신규) 신청수수료 : 500원 → 4,500원
 - 공유재산의 대부(연장) 신청수수료 : 300원 → 2,700원
 -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(개인)수수료 : 5,000원 → 18,000원
 -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(법인)수수료 : 20,000원 → 27,000원
 - 의료기관(부속) 개설신고수수료 : 20,000원 → 36,000원
 - 의료기관(부속)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수수료 : 10,000원 → 18,000원
 -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: <신설> 27,000원
 -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수수료 : <신설>9,000원
- 관련법령 유권해석에 따른 수수료 폐지
 - 납품 및 공사실적증명<삭제>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20310호)
- 건설공사 등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미부과 알림 공문 (경상북도 회계과-990 <2008.1.24>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조정하여 유사 사무에 대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및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방세납세(완납)증명 수수료의 전액 감면과 납품 및 공사실적 증명수수료를 폐지하였음
- 법령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등 9개 종목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음
 -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: 「300원」 → 「900원」
 - 공유재산의 대부(신규)신청 수수료 : 「500원」 → 「4,500원」
 - 공유재산의 대부(연장) 신청수수료 : 「300원」 → 「2,700원」
 -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(개인)수수료 : 「5,000원」 → 「18,000원」
 -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(법인)수수료 : 「20,000원」 → 「27,000원」
 - 의료기관(부속) 개설신고수수료 : 「20,000원」 → 「36,000원」
 - 의료기관(부속)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수수료 : 「10,000원」 → 「18,000원」 으로 조정하고,
 -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와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수수료를 각 「27,000원」 과 「9,000원」 으로 신설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근거로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타 법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